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63

발의연월일: 2021. 12. 23.

발 의 자: 강은미・이은주・류호정

조오섭 · 장혜영 · 심상정

민형배 • 배진교 • 강민정

윤영덕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 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 3. "디지털 기술변화"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거나 도입함으로써 일자리 및 일의 내용・형태 등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4. "일하는 사람"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양질의 일자리"란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고, 자유로우며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직무와 직업의 전환에 있어 충분한 교 육 기회가 제공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 하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 7.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8.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일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9. "사용자단체 등"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와 그 밖에 사용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의체를 말한다.
- 10.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하 "일하는 사람 등"이라 한다)의 실질적이고 대등 한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 2.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일하는 사람 등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정책을 수립·이행하 여야 한다.
 -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재교육, 취업 및 전직 등 일하는 사람 등의 역량 증진과 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등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롭고 안 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환경과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6. 정부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대응 과정의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사업의 축소나 폐지, 경기 침체, 생산 및 서비스 방식의 변화로 급격한 고용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 및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 7.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 등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정부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료·주거·교육·교통·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립·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 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 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 여 제8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16조에 따른 산업·업종·지역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산업, 고용, 사회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 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정의로운일자리전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의로 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산업·일자리 ·지역·계층에 대한 현황과 전망
- 2. 산업전환 과정의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 정 대책
- 3. 일하는 사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직무 및 직업 훈련 대책
- 4. 일하는 사람 등에 대한 사회보험 및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 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행정ㆍ금융ㆍ세제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등

제8조(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6인
 - 2.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 6인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인
 - 4.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6인
 - ②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 6인으로 한다.
 - ③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
 -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협력업체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후 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집단 및 영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전국적 규모의 자영업자·농어민·중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기후위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⑥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책임)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

- 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소집·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사무처장 을 겸임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

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와 관련한 산업, 노동 및 사회정책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임면 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산업·업종 및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이하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추천하는 해당 부처 1 급 이상의 공무원 2인
 - 2. 산업·업종·지역의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인
 - 3. 산업·업종·지역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사람 1인
 - 4. 산업·업종·지역의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그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인

- 5. 산업 · 업종 · 지역의 협력업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1인
- 6. 다음 각 목의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각 1인
 - 가.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단체
 - 나. 해당 지역의 기후위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 ③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 ④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산업 ·업종·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① 정부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 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 분석
 - 2.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 마련
 - 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4.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일하는 사람 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 5.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재원) 이 법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일반회계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제3장 작업장 내 민주주의

제19조(민주적 의사결정) ① 사용자는 기후위기·디지털 기술변화와 관련된 사업의 중요한 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와 공동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 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공동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기존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변경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작업 인원·조직·방식과 근무 시간·형태 등 고용 및 근로조건 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기술의 도입 또는 새로운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기후위기 또는 천재지변·전염병 등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감원 등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사항
- 4.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량 및 생산방식의 변경과 관한 사항
- 5. 작업조직의 변경, 배치전환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 6. 합병, 분할, 영업양도, 국내외 공장 이전 및 신설, 자산매각 등 사업의 구조변동에 관한 사항
- 7. 사업 또는 업무의 외주화, 하도급화와 관련한 사항
- 8. 그 밖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결정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결정하는

- 경우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내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과 근로자대표의 선출·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정보제공 등) ① 사용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재정 상태, 사업 계획, 생산 계획, 인력 운용 계획, 인사정책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정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경영·재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및 재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분석·연구 의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1조(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의 체결)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정과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제공 등에 관한 절차와 범위를 별도의 협약(이하 "민주적의사결정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민주적의사결정 협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 ②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

라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단체 등과 노동조합이 산업·업종 또는 지역이나 기업 차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이하 "초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이 제대 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초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 체결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초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을 체결하였 거나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초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을 체결하 였거나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과정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업별 민주적 의사 결정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상·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분쟁의 해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